민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보숭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27

발의연월일: 2020. 6. 12.

발 의 자 : 황보승희 · 안병길 · 강기윤

정동만 • 전봉민 • 허은아

박수영 · 정운천 · 박덕흠

김예지・金炳旭・백종헌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'2018년 아동학대 주요통계'에 따르면, 2018년 아동학대 사례 2만4,604건 가운데 학대 행위자의 76.9%가 부모고 80.3%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으며, 이들 학대 부모에 의한 재학대 사례는 2,543건, 재학대 아동명수는 2,19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. 최근 부모가 9세 아동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두어 목숨을 잃게하는 등 아동학대 피해가 심각한 상태임.

한편, 현행 「민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권은 마치 정당한 '체 벌권'으로 인식되고 있어 부모의 아동학대 시 소극적 처벌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아동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되 체벌이 아닌 훈 육을 하는 방향으로 친권자의 권리의무를 개선하고, 삭제된 조문 중 '감화 및 교정기간 위탁' 부분의 내용을 거소지정권의 내용에 반영하고자 함(안 제913조 및 제914조, 제915조 삭제).

법률 제 호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13조 중 "權利義務가"를 "권리의무가 있으며, 자에게 필요한 훈육을 할 수"로 하고,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이 경우에 체벌을 해서는 아니 된다.

제914조 중 "親權者의"를 "친권자가"로 하고,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친권자는 자를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 탁할 수 있다.

제915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913條(保護, 教養의 權利義務)	第913條(保護, 敎養의 權利義務)
親權者는 子를 保護하고 敎養할	
權利義務가 있다. <단서 신설>	권리의무가 있으며, 자에게 필
	<u>요한 훈육을 할 수</u> <u>다만,</u>
	이 경우에 체벌을 해서는 아니
	<u>된다.</u>
第914條(居所指定權) 子는 <u>親權者</u>	第914條(居所指定權) <u>친권자가</u>
의 指定한 場所에 居住하여야	
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<u>다만, 친권자는 자를 법원</u>
	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
	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第915條(懲戒權) 親權者는 ユ 子	<u><삭 제></u>
를 保護 또는 敎養하기 爲하여	
必要한 懲戒를 할 수 있고 法院	
의 許可를 얻어 感化 또는 矯正	
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.	